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소속의 임직원 중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가. 「축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 나.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 다.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 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한우자조금을 설치·운용하는 단체
3. 한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한우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제3조(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한우의 수급조절에 관한 내용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조절협회가 심의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현황
2.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6조(교육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

2.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해 지원 또는 포상을 할 때에는 한우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해 한우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관리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2.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제8조(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한우 생산업 계획의 제출)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은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계획을 해당 기업의 사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협력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가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3. 한우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비추어 사육규모 과잉이 우려되는 경우 암소감축 등을 통한 수급조절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 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방안
4. 그 밖에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생산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업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사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해당 사육시설”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으로서 해당 사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한우사육업의 품목조합으로서 해당 사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품목조합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 해당 사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지부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흑우 등 보호품종)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제주흑우 및 칩한우(칩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것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것
-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
- 라. 그 밖에 한우의 생산 및 사육과 관련하여 축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항목	내용
가. 저메탄사료의 급여	1) 메탄저감제를 가축 성장단계별 급여량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는 것. 이 경우 메탄저감제는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에 한정한다. 2) 메탄저감제의 첨가량은 일일 총 배합사료 건물 급여량 kg 당 1g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사육기간 단축	연간 전체 출하량의 30~50%를 사육월령 28개월 이하의 한우로 출하하는 것
다. 저탄소 분뇨 처리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고정형·설비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 다만, 한우 이외에 타 축종과 동시 사육하여 퇴비사를 공유할 경우에는 한우 비율대로 설비되어야 한다. (비고)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란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기계·장비를 활용해 퇴비 더미를 교반·혼합하고, 송풍장치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한우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 가. 한우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의 면적(ha) =
 조사료생산량(톤/년)/동계작물 건물생산량(톤/ha)+하계작물 건물생산량(톤/ha)

(산정예시)

항목	조사료 생산량 (톤/년)(A)	동계작물 건물생산량(B)	하계작물 건물생산량(C)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 면적 (A/(B+C))
계	759.2	9(이탈리안라 이그라스)	15(옥수수)	31.63

* 한우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 필요량(759.2톤)을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재배할 경우 필요한 재배면적(759.2/24=31.63)을 산정한다.

나. 가목의 계산식 중 “조사료생산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조사료생산량(건물기준) = $\sum$ (사육두수 × 평균 사육일령 × 조사료 건물섭취량)
 (산정예시)

축군	사육개월령	사육두수 (A)	평균 사육일령 (B)	조사료의 건물섭취량 (kg) (C)	조사료 생산량(kg/년) (A×B×C)
번식우	0~2산차				
번식우	0~5산차	500	365	2.2	401,500
번식우	4~6개월				
번식우	7~14개월				
번식우	15개월 이후				
비육우	4~6개월				
비육우	7~12개월				
비육우	13~29개월				
비육우	7~29개월	500	365	1.96	357,700
계		1,000			759,200

* 한우 사육두수 1,000두(번식우 500두 + 비육우 500두)를 기준으로 한우생산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량(사육
 두수 산정방법 = $\sum$ (사육두수 × 평균 사육일령/365))을 산정한다.

다. 나목의 계산식 중 “조사료 건물섭취량”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축군	사육개월령	조사료 건물섭취량(kg/일)
번식우	0~2산차	1.90
번식우	0~5산차	2.20
번식우	4~6	0.81
번식우	7~14	1.33
번식우	15개월 이후	2.52
비육우	4~6개월	1.94
비육우	7~12개월	2.67
비육우	13~29개월	1.60
비육우	7~29개월	1.96

라. 가목의 계산식 중 “동계작물 건물생산량”과 “하계작물 건물생산량”은 법 제26 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다.

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 건물생산량(톤/ha/년)

동계					하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연맥	동계혼파	옥수수	수단 그라스	사료용벼
9	9	9	7	9	15	13	13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우생산 기업이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용도로 확보하려는 토지와 같은 토지에서 최근 3년간 조사료용 사료작물이 재배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건물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다.

$\text{연간 건물생산량} = \text{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의 최근 3년간 평균 원물생산량(톤/ha)} \times \text{건물함량(100-평균 수분)}$

바. 조사료용 사료작물 작부체계는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여건 등에 따라 동계작물 재배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배하여야 한다.